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6. 12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 : 신흥식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4일

라. 상정일자: 제16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(2012년 6월 1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신흥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구와 동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원 수와 임원구성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 정비
 - 구청소년지도협의회
 - ·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명 ⇒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
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(안 제19조제2항)
 - 동청소년지도협의회
 - · 지도위원 20명 이내 ⇒ 지도위원 25명 이내
 - · 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 ⇒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총무 1명으로 변경(안 제19조제3항)
-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성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구와 동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보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명에서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하고,
-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 지도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고 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에서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총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「청소년기본법」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,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,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, 협의회의 지도위원 증원과 임원구성을 보완·정비하여 조직을 체계화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의 자율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 주요 골자

- 안 제 19 조 제 2 항 중
 - "부회장 3명"을 "부회장 3명 이내"로 하고,
- 같은 조 제 3 항 중
 - "25명"을 "30명"으로,
 - "부회장 3명"을 "부회장 3명 이내"로,
 - "호선한다"를 "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"로 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 련 번 호 130호

제안년월일 : 2012. 6.

제 출 자 : 이재형 위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○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의 자율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 19 조 제 2 항 중
 - "부회장 3명"을 "부회장 3명 이내"로 하고,
- 같은 조 제 3 항 중
 - "25명"을 "30명"으로,
 - "부회장 3명"을 "부회장 3명 이내"로,
 - "호선한다"를 "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"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 19 조 제 2 항 중
 - "부회장 3명"을 "부회장 3명 이내"로 하고,
- 같은 조 제 3 항 중
 - "25명"을 "30명"으로,
 - "부회장 3명"을 "부회장 3명 이내"로,
 - "호선한다"를 "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	제1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
부회장 3명	부회장 3명 이내,
 ③ <u>25명</u>	30명
부회장 3명,	부회장 3명 이내,
<u>호선한다.</u>	<u>호선하고</u>
	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
	<u>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30 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일

발 의 자 : 신흥식의원 외 5명

1. 제안이유

구와 동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원 수와 임원구성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 정비

- 구청소년지도협의회
 - ·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명 ⇒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(안 제19조제2항)
- 동청소년지도협의회
 - · 지도위원 20명 이내 ⇒ 지도위원 25명 이내
 - · 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 ⇒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총무 1명으로 변경(안 제19조제3항)
- 나.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청소년기본법」,「청소년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규제심사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- 제명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"로 한다.
- 제1조 중 "청소년관계법령"을 "청소년 관계 법령"으로, "서울특별시영등포 구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"로 한다.
- 제2조 중 "청소년관계법령"을 "청소년 관계 법령"으로 한다.
- 제3조 중 "청소년관계법령"을 "청소년 관계 법령"으로 한다.
- 제4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"을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" 으로 한다.
- 제5조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- 제7조 중 "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육성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"로, 같은 조 제2호 중 "관계행정기관"을 "관계 행정기관" 으로 한다.
- 제8조제3항제2호 중 "관계기관"을 "관계 기관"으로, "자"를 "사람"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"자"를 "사람"으로, 같은 항 제4호 중 "관련기관"을 "관련 기관"으로 한다.
- 제14조 중 "중·고등·대학생인"을 "중학생·고등학생·대학생인"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"를 "관계 공무원, 청소년 관계 전문가"로 한다.

제17조 중 "대하여는"을 "대해서는"으로, "범위 안"을 "범위"로, "기타경비"를 "그 밖의 경비"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부회장 2명, 총무 1명"을 "부회장 3명, 감사 2명, 사무국장 1명"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"20명"을 "25명"으로, "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"을 "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총무 1명"으로 한다,

제20조제1항 중 "자"를 "사람"으로, "관할지역"을 "관할 지역"으로, "관할 동장"을 "관할 동장"으로 한다.

제22조 중 "자는"을 "사람은"으로, 같은 조 3호, 4호 중 "자"를 "사람"으로 한다. 제25조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30조 중 "모집함"을 "모집"으로 한다.

제32조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, 같은 조 5호 중 "자"를 "사람"으로 한다. 제36조제3항 중 "대하여는"을 "대해서는"으로,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"를 "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"를 "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"로, "적정한"을 "적절한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"관할경찰서"를 "관할 경찰서"로, "관계기관"을 "관계 기관"으로 "청취하여야"를 "들어야"로 한다.

제41조 중 "청소년 통행금지구역"을 "청소년통행금지구역"으로, "때에는"을 "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"구역 안에서"를 "구역에서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구역내에"를 "구역에"로, 같은 조 제3항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45조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 제47조제2항 중 "제1호서식에"를 "제1호 서식에"로 한다. 제50조제1항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</u> <u>기본조례</u>	제명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</u> <u>기본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"기본법"이라 한다)과 「청소년보호법」(이하 "보호법"이라 한다) 등 청소년관계법령에 따라서울특별시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
제2조(구의 책무) 구는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<u>청소년관계법령</u>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.	제2조(구의 책무)
제3조(구민의 협력) 모든 구민은 기본법과 보호법 등 <u>청소년관</u> 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,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·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민의 협력) <u>청소년 관계 법령</u>
제4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 ②・③ (생 략)	제4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</u>
제5조(청소년의 달)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청소년의 달)범위
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설치 및 기능)	제7조(설치 및 기능)
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육성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(생 략) 2.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. ~ 7. (생 략)	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 략) ③ (생 략) 1. (생 략) 2. 청소년단체, 구 직능단체, 관계기관(교육청 및 경찰서 등)에서 추천한 <u>자</u> 3. 학부모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 4. 청소년 관련기관의 공무원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
제14조(청소년 회의 개최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중·고등·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	제14조(청소년 회의 개최)
제16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<u>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</u>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제16조(의견청취 등)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당·여비 및 <u>기타경비</u> 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	제17조(수당 등)

r	·
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	
제1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명으로 한다. ③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"지도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 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으로 하되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제1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제20조(지도위원의 위·해촉) ①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<u>자</u> ,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<u>관할지역</u> 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학교장, 경찰관서장, <u>관할동장</u>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 ② (생 략)	제20조(지도위원의 위·해촉) ①
제2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는</u>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 1. · 2. (생 략)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<u>자</u> 4.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 업소를 운영하는 <u>자</u> 등	제22조(결격사유)
제25조(필요경비 등 지원)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·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<u>범위 안</u> 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25조(필요경비 등 지원) 범위
제30조(수탁자 선정)	제30조(수탁자 선정)

	·
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<u>모집함</u> 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」제24조에 따라 시설 관리공단에 시설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12.29> ② (생 략)	①
제32조(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)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(구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)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 교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	제32조(청소년교류활동의 진홍)
제33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·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제33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제36조(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) ①·② (생 략)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<u>범위 안</u> 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36조(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대해서는</u> <u>범위</u>
제39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①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</u> 청소년 통행금 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	제39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①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</u>

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한다.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기준으로 하되,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.다만,부모및 친권자,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한다.	
제40조(지정절차)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,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<u>청취하여</u> 야 한다. ② (생 략)	제40조(지정절차) ①
제41조(지정해제)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	제41조(지정해제)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</u>
제43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) ① 해당 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.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위하여 구역내에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 ③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43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) ① 구역에서

제45조(신고포상금 지급) 구청장은 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 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 안</u>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45조(신고포상금 지급) 범위
제47조(신고방법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·보존 하여야 하며,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	제47조(신고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호 서식에
제50조(지급방법)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, 지급액은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 ② (생 략)	제50조(지급방법) ①범위